# 공인인증업무준칙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
# Version 4.4

**신고일자 : 2016. 3. 7**

**시행일자 : 2016. 3. 22**

## ㈜한국무역정보통신
## 전자무역인증센터 TradeSign

**문서 버전 관리**

| 버전 | 날짜 | 책임자(관리자) | 내역 | 변경사유 |
|---|---|---|---|---|
| 0.1 | 2001.3.21 | James Eaton | 초안 | |
| 1.0 | 2001.7.12 | 김철기 이사 | 제정 | 서비스 변경 |
| 1.5 | 2002.8.13 | 김철기 이사 | 개정 | 서비스 변경 |
| 1.6 | 2002.10.29 | 김철기 이사 | 개정 | 서비스 변경 |
| 2.0 | 2003.6.4 | 한학희 이사 | 개정 | 서비스 변경 |
| 2.1 | 2004.4.13 | 한학희 이사 | 개정 | 수수료 변경 |
| 2.5 | 2007.2.15 | 오기현 상무이사 | 개정 | 서비스 변경 |
| 3.0 | 2007.5.21 | 오기현 상무이사 | 개정 | CPS표준 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6호) |
| 3.1 | 2007.7.6 | 오기현 상무이사 | 개정 | 정보통신부의 변경 요청<br>(공문: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1413 "공인인증업무준칙 변경요청") |
| 3.2 | 2010.6.15 | 김웅겸 상무이사 | 개정 | 관련기관명 변경, 가입자 의무, 주소 변경, 폐지 요건, 보증 등 변경 |
| 3.3 | 2011.2.28 | 김웅겸 상무이사 | 개정 | 배경 및 목적 변경, CA/RA/가입자 책임 및 의무사항 추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명시, 재발급 수수료 명시, 환불 요건 구체화, 가입자 정보 진정성 확인 명시, 신규발급 절차 구체화, 갱신후 잔존 인증서 유효기간 안내, CRL 공고까지 걸리는 시간, OCSP/TSA 서비스 이용안내, OCSP 서비스 인증서 프로파일, CA전자서명키배포 절차, 공인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절차, 공인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절차, 공인인증업무관련 공고 구체화, 절차적보호조치, 인적보안, 기록보존 보완, 배상 요건 구체화, 분쟁해결/개인정보보호/감사및점검/CPS 효력 구체화 등 |
| 4.0 | 2011.3.15 | 김웅겸 상무이사 | 개정 | 118 공인인증서 긴급 폐지 관련 추가 |
| 4.1 | 2012.8.3 | 강진석 상무이사 | 개정 |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개정<br>정기점검 보완사항<br>개인정보보호법 관련사항 등 |
| 4.2 | 2012.10.30 | 강진석 상무이사 | 개정 | 공인전자주소 이용목적 추가 등 |
| 4.3 | 2013.5.10 | 강진석 상무이사 | 개정 |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변경<br>갱신기간 : 만료1개월 → 만료2개월<br>주소 및 신청접수처 변경 |
| 4.4 | 2013.5.10 | 황철우 상무이사 | 개정 | o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수준 강화<br>o 감사기록의 유형 변경 및 보존기간 늘림 |

| | | | | |
|---|---|---|---|---|
| | | | | (2년 → 10년)<br>o 보안매체에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년 → 5년 미만)<br>o 공인인증수수료(OCSP) 수수료 인하 500원 → 200원<br>o 가입자의 책임 및 의무조항 구체화<br>o 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변경<br>o 전자서명법의 용어로 통일<br>생성키 → 생성정보 / 검증키 → 검증정보 |

# 목차

# 1. 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1.1.1.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이 공인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s)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이하 "CPS표준"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자무역인증센터(영문명 "TradeSign"이라 합니다.)의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CPS는 TradeSign을 비롯한 인증관련 당사자(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 1.1.2.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 1.1.3. TradeSign 소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11일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TradeSign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 이름입니다.

- 웹사이트 : www.tradesign.net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공인인증서 신청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층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전화번호 : 1566-2119

### 1.1.4. 공인인증서 정의 및 효력

TradeSign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에 의한 전자서명은 동법 제3조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전자서명법 제3조 참고)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1.2.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명칭

이 공인인증업무준칙은 "TradeSign 공인인증업무준칙(CPS)"이라 합니다.

## 1.3.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 1.3.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감독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 있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업무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등

### 1.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서 최상위인증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인증업무를 폐지한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 등 인수
-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 등 인수
-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지원
- 공인인증기관 검사 및 안전운영 지원
-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전자서명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인증 등 인증업무 수행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발급
- 시점확인 서비스
- 기타 전자서명 인증과 관련된 업무

### 1.3.3. TradeSign(CA)

TradeSign은 공인인증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 신원확인
- 가입자와 등록대행기관(RA)에 대한 공인인증서 생성, 폐지
- 등록대행기관(RA)의 지정 및 관리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의 공포

#### 1.3.3.1. 책임과 의무

##### 1.3.3.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TradeSign은 다음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합니다.

- 공인인증기관 지정 관련 실질심사

-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및 재발급 포함) 신청
-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
-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등 TradeSign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가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 TradeSign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내의 정보는 착오가 없다.
- 공인인증서의 발급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가입자로부터 TradeSign까지의 경로 상에 TradeSign의 착오로 인한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 1.3.3.1.2. 인증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

TradeSign은 준칙 및 관련정보를 1.1.3(TradeSign 소개)에서 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효력정지와 폐지에 관련된 정보를 디렉토리 또는 웹서버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입자와 이용자가 항상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3.3.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의거 가입자의 정보를 기밀정보로 분류하고 임의 접근을 제한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한 임의 접근 및 변경 또는 삭제를 불허합니다. 단, TradeSign은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3.3.1.4.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올바른 이용

TradeSign은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각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는 해당 분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용으로 만든 전자서명생성정보는 공인인증서 발급에만 이용한다.
- 시점확인을 위해 만든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시점확인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 공인인증서 유효성 상태정보(OCSP)검증용으로 만든 전자서명생성정보는 공인인증서 검증에만 이용한다.

#### 1.3.3.1.5.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의거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손상, 노출, 파손, 분실, 도난 등 공인인증서의 신뢰도 및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전자서명법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 폐지 등),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27조의2(상호인정) 등에 의하여 TradeSign의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등에 의거 법적인 조치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당사실을 TradeSign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TradeSign는 통보조치 후에 가입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1.3.3.1.6.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TradeSign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서명관련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1.3.4. 등록대행기관(RA)

TradeSign은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은 다음의 업무에 대해 TradeSign을 대신합니다.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 신원확인
-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전산입력

#### 1.3.4.1. 책임과 의무

##### 1.3.4.1.1. 가입자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기준및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신원확인을 하며 이때 반드시 실지명의를 대면으로 확인합니다.

##### 1.3.4.1.2.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합니다.

##### 1.3.4.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법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의거 가입자의 정보를 기밀정보로 분류하고 임의 접근을 제한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한 임의 접근 및 변경 또는 삭제를 불허합니다.

### 1.3.5. 가입자

이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TradeSign의 공인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개인,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를 의미합니다.

TradeSign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입자를 대신하는 정보통신장비를 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3.5.1. 책임과 의무

##### 1.3.5.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는 가입자의 용도에 맞게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경우에 정

확한 정보를 TradeSign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 공인인증서의 폐지
- 가입자의 변경된 정보의 제공

#### 1.3.5.1.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가입자는 전자서명법 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유출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등록대행기관 또는 TradeSign에게 통보하여 해당 인증서를 폐지 또는 효력정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1.3.5.1.3. 공인인증기관 면책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사용과 공개에 있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TradeSign의 면책을 보장합니다. 이 의무는 가입자의 공인인증업무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시작되며 공인인증서 만료(폐지 포함)후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 가입자가 그릇되게 제공한 정보
- 가입자가 태만 또는 고의로 제공하지 않은 변경된 정보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관리 부주의(정보 노출, 분실, 변조 등)

#### 1.3.5.1.4. 가입자 정보 변경의 통보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휴대전화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
- 가입자의 구속, 사망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단, 구속이나 사망 등 가입자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입자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 1.3.6. 이용자

TradeSign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를 의미합니다.

#### 1.3.6.1. 책임과 의무

##### 1.3.6.1.1. 공인인증서의 용도 내 사용

이용자는 TradeSign의 공인인증서 이용목적 및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1.3.6.1.2.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전자서명 생성 등)할 때에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이용된 시점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공인인증서가 이용된 시점에 공인인증서가 정지 또는 폐지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 1.3.6.1.3. 배상 책임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TradeSign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TradeSign 또는 가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1.3.7. 대리인

대리인은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비스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해 지정하거나 허락한 자를 의미하며,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4.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관리

TradeSign의 공인인증서비스에 관련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URL : http://www.tradesign.net/cps.html
- 전자우편 : tradesign@ktnet.co.kr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 6층
- 전화 : 1566-2119
- FAX : (02)6000-2086

이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권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대표이사이며, 전자무역인증센터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TradeSign은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의 변경 및 서비스의 변경 등 필요 시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자서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제·개정된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TradeSign은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5. 정의 및 약어

이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②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서명검증정보"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④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⑤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⑥ "가입자"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⑦ "서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공인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 2.1. 공인인증서 종류

TradeSign은 가입자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업무(이하 "공인인증서비스"라 합니다)를 수행하며, 공인인증서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최대 1년 이며 다만, 보안매체(금융IC카드, 보안토큰, USIM 등)에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 2.1.1. 범용인증서

| 정책이름 | 이용기관 | 용도 |
|---|---|---|
| 전자거래범용(사업자)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
| 전자거래범용(개인)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 개인(자연인)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
| 전자거래범용(서버) | 모든 전자거래 이용기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신원확인, 전자서명 및 암호화 (서버 또는 장치의 사전 설정에 의한 전자서명, 암호화 포함) |

#### 2.1.1.1. 범용인증서 OID

| 정책이름 | OID(서명용) | OID(암호용) |
|---|---|---|
| 전자거래범용(사업자) | 1 2 410 200012 1 1 3 | 1 2 410 200012 1 1 4 |
| 전자거래범용(개인) | 1 2 410 200012 1 1 1 | 1 2 410 200012 1 1 2 |
| 전자거래범용(서버) | 1 2 410 200012 1 1 5 | 1 2 410 200012 1 1 6 |

### 2.1.2. 용도제한용 인증서

| 정책이름 | 이용기관 | 용도 |
|---|---|---|
| 용도제한용 인증서 | 특정 전자거래기관 및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 한정된 용도(업무)<br>-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서비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정부 전자민원 등 |

## 2.2. 공인인증서비스 수수료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8조(요금부과)에 따라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 및 부과 시기,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2.1. 공인인증서

| 구분 | 발급대상 | 수수료(1년) |
|---|---|---|
| 신규발급 / 갱신발급 | 개인 | 4,000 |
| | 법인/단체/개인사업자 | 100,000 |
| | 서버 | 1,000,000 |
| 재발급 | 개인 | 무료 |
| | 법인/단체/개인사업자 | 10,000 |
| | 서버 | 무료 |

### 2.2.2. 공인인증서 조회 및 확인 수수료

TradeSign은 공인인증서를 조회, 확인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2.3. 공인인증서 유효여부 확인 수수료

| 구분 | 수수료(건) |
|---|---|
| 실시간유효확인(OCSP) | 200원 |
|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 무료 |

### 2.2.4. 시점확인 (TSA)

| 구분 | 수수료(건) |
|---|---|
| TSA | 500원 |

## 2.3. 환불

### 2.3.1. 환불사유

TradeSign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합니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환불을 요청 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2.3.2. 환불수수료

| 수수료 | 사유 |
|---|---|

| | |
|---|---|
| 없음 | 가입자가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5일 영업일 이내에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공인인증서 발급 전이어야 함) |
| 계좌이체수수료(1000원)<br>+<br>PG수수료 | 가입자가 요금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고 환불 신청한 경우 (단 공인인증서 발급 전이어야 함) |
| | 가입자가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6일 영업일 이후에 환불신청을 한 경우 (단 공인인증서 발급 전이어야 함) |
| 단 찾아가는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환불신청을 한 경우, 위 환불수수료에 찾아가는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

# 3.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공인인증업무

## 3.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 3.1.1. 공인인증서 신청 주체 및 신청 절차

공인인증서 신청 주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며 이 신청 주체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신원확인 증표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신청인을 확인하고 발급을 안내합니다.

### 3.1.2. 등록대행기관 주소 및 연락처

TradeSign 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마다 등록대행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주소 및 연락처 정보는 TradeSign 웹사이트(www.tradesign.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용이 아닌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신청은 등록대행기관별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3.1.3.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 기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은 신원확인과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기준으로 승인하며,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1.4.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 중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사항

TradeSign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3.1.4.1. 개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 3.1.4.2. 법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3.1.4.3. 법인이 아닌 단체 (국세 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표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 3.1.5.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 기간

TradeSign 및 등록대행기관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2.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 3.2.1.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TradeSign 및 등록대행기관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증표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며 이 절차는 신청자와의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3.2.2. 신원확인 증표

신원확인 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2.2.1. 개인

| 구분 | 신원확인 증표 |
|---|---|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아닌 자 | 신분증(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사진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및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원확인 증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재외국민 등록증 |
| 외국인 | 여권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추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 3.2.2.2. 법인

| 구분 | 신원확인 증표 |
|---|---|
| 법인의 대표가 신청하는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br>-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

| | |
|---|---|
| 경우 | -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br>-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br>- 대표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br>(공동대표 법인의 경우 모든 대표의 신원확인 증표를 확인함) |
|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br>-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br>-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br>-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br>- 대리인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3.2.2.3. 법인이 아닌 단체 (국세 기본법의 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

| 구분 | 신원확인 증표 |
|---|---|
|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br>-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br>- 대표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br>(대표가 2인 이상이면 모든 대표의 신원확인 증표를 확인함) |
|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사본<br>- 소득세법상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br>- 대리인의 3.2.2.1 항에 의한 신원확인 증표 및 대표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3.2.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통해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며, TradeSign으로 직접 전송합니다.

### 3.2.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하여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 3.2.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은 공인인증서 발급 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POP(Proof Of Possession)을 통해 증명합니다.

### 3.2.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 및 유일성 보장은 공인인증서 발급 시 가입자 이름을 CN(Common Name)값에 기술하며, 별도의 값을 통해 유일성을 보장합니다.

#### 3.2.7.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수령합니다.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한 안내문을 수령한다. → www.tradesign.net 의 신규발급에서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입력한다. → 인증서 암호를 설정한다. (10자리 이상의 영숫자 및 특수문자 포함) → 저장위치를 선택한다. (하드디스크, 이동디스크, 보안토큰 등) → 수령 완료

#### 3.2.8. 찾아가는서비스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를 내방하여 신청접수 및 발급안내를 제공(찾아가는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3.2.8.1.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수행방법

3.2.1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에 따릅니다.

##### 3.2.8.2. 가입자 신청서류 이송방법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가 가입자의 신청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3.2.8.3. 신원확인 담당자의 신분확인 방법

가입자가 요구하면 찾아가는서비스 담당자는 사원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3.2.8.4. 신원확인 담당자의 교육 이수

TradeSign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찾아가는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신원확인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은 신입직원 교육, 정기교육, 수시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 3.2.9.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장

TradeSign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대행기관에게 가입자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및 전자서명 처리를 통해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제3자(중계서비스기관 등)을 경유하여 가입자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습니다.

### 3.3.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 3.3.1.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갱신발급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전자서명 생성정보와 유효기간이 갱신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 3.3.2.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르며, 유효한

가입자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3.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3.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3.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 및 유일성 보장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3.7. 가입자가 갱신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가 갱신발급 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3.8. 갱신 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

갱신발급이 완료되어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되어도 기존 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증서의 폐지가 필요하다면 가입자가 직접 '3.6 공인인증서의 폐지' 에 따라 폐지하여야 합니다.

### 3.4. 공인인증서 재발급

#### 3.4.1.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가입자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노출, 분실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3.4.2.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4.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4.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4.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4.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4.7. 가입자가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가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 3.5.1.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은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신원확인 정보,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가입자 등록정보를 변경합니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절차에 따릅니다.

#### 3.5.2.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5.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5.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5.5.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5.6.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 및 유일성 보장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5.7. 가입자 등록정보가 변경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가 가입자 등록정보가 변경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 3.6.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 3.6.1.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의 정의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가입자의 신청 등으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은 효력정지된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가입자의 신청 등으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회복은 효력정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는 가입자의 신청 등으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영구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3.6.1.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요건

TradeSign은 가입자가 전자서명법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에 의거 다음의 사유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의 생성정보에 대한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또는 해산, 법인의 폐업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준칙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입자의 의무사항 준수가 천재지변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 가입자의 착오로 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3.6.1.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의 주체 및 절차

① 가입자 신청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TradeSign에 제출
- 가입자가 www.tradesign.net 의 효력정지.폐지에서 기존의 유효한 공인인증서로 신원확인(로그인)을 하고 신청
- 가입자가 TradeSign으로 전화(1566-2119)하여 TradeSign 담당자가 요구하는 2가지 이상의 가입자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폐지

② TradeSign 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에게 폐지, 효력정지 사유를 통보(email, 전화 등)하고 폐지, 효력정지 후, 공인인증서 폐지대장에 기재합니다.
- 가입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폐지 또는 효력정지 후, 관련 내용을 TradeSign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통합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TradeSign 가입자가 전화(118)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회신 전화번호를 남기면 TradeSign 담당 직원이 회신 번호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가 요구하는 2가지 이상의 가입자 개인 정보(주민번호 제외)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신청접수는 개인용 인증서에 한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서버인증서는 제외)
- 118 통합콜센터에 의한 폐지신청 접수 시각은 TradeSign 담당자가 2가지 이상의 가입자 개인정보 및 인증서 폐지 의사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18 통합콜센터에 의한 폐지신청 접수 이후 처리 시간은 본문 3.6.5 절에 따릅니다.
- 118 통합콜센터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되면 해당 인증서의 폐지목록(CRL)은 TradeSign 디렉토리 시스템에 게시됩니다.
- 전자거래 이용기관에서 새로 게시된 CRL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전의 유효한 CRL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TradeSign 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3.6.1.4.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발행시점으로부터 공고하는 데까지 소요시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최대 24시간 단위로 발행하며, 발행시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6.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효력정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생성정보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으로 신청인이 긴급하게 공인인증서 폐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 3.6.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6.4.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은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3.6.5.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 접수부터 해당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까지 소요되는 최대 처리시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시간은 해당 신청이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최대 60분 이내이며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나타난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리 시간을 변경합니다.

### 3.6.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주기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25시간 유효기간을 가지며, 매일 1회 발행합니다.

### 3.6.7.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 시점부터 해당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을 공고하는데 까지 소요 시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발행 시점부터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약관에 나타난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리 기간을 변경합니다.

#### 3.6.8.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상태 유지 가능 기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상태는 최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3.7.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 3.7.1. 이용 방법

공인인증서의 유효 또는 폐지(효력정지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OCSP라 하며 신청자는 사전에 TradeSign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CSP 서비스 이용자는 TradeSign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OCSP client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7.2. 이용 조건

OCSP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이용요금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TradeSign 과 이용자는 RFC2560 표준에 따라 요청 및 응답 전문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3.7.3. 이용계약 해지

이용자가 OCSP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한 달 전에 TradeSign 으로 통보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8. 시점확인서비스(TSA)

#### 3.8.1. 이용 방법

전자문서의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점확인서비스(TSA)라 하며 신청자는 사전에 TradeSign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TSA 서비스 이용자는 TradeSign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TSA client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8.2. 이용 조건

TSA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이용요금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TradeSign 과 이용자는 RFC3161 표준에 따라 요청 및 응답 전문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3.8.3. 이용계약 해지

이용자가 TSA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한 달 전에 TradeSign 으로 통보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9.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 3.9.1. 가입자 공인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가입자 공인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은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기술규격"을 따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필드

| # | 필드명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Version | m | m | V3 |
| 2 | Serial Number | m | m | 자동으로 할당되는 일련번호 |
| 3 | Issuer | m | m | 인증서 발급자의 DN |
| 4 | Validity | m | m | 인증서 유효기간 |
| 5 | Subject | m | m | 인증서 사용자의 DN |
| 6 | Subject Public Key Info | m | m | 인증서 공개정보 정보 |
| 7 | Extensions | m | m | 확장필드 |

- 확장필드

| # | 필드명 | C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Authority Key Identifier | n | m | m | 발급기관 정보 식별자, 디렉토리 주소, 인증기관 인증서 시리얼 번호 |
| 2 | Subject Key Identifier | n | m | m | 주체정보 식별자 |
| 3 | Key Usage | c | m | m | Digital Signature, non-Repudiation |
| 4 | Certificate Policy | c | m | m | 인증서 정책, CPS 주소, 공인인증서 표시규격 |
| 5 | Policy Mappings | - | - | - | 사용안함 |
| 6 | Subject Alternative Names | n | m | m | 가입자 한글실명과 VID |
| 7 | Issuer Alternative Names | n | o | m | 사용안함 |
| 8 | Extended Key Usage | n | o | o | 보안토큰 사용 시 사용 |
| 9 | Basic Constraints | - | x | x | 사용안함 |
| 10 | Policy Constraints | - | - | - | 사용안함 |
| 11 | Name Constraints | - | - | - | 사용안함 |
| 12 | CRL Distribution Point | n | m | m | CRL 획득 정보 |
| 13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n | m | m | 사용안함 |

## 3.10.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프로파일

### 3.10.1. 가입자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의 구성 및 내용

가입자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의 구성 및 내용은 "전자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 기술규격"을 따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필드

| # | 필드명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Version | m | m | V2 |
| 2 | Signature | m | m | 서명 알고리즘 |
| 3 | Issuer | m | m | 발급자의 DN |
| 4 | This Update | m | m | 개시날짜 |
| 5 | Next Update | m | m | 다음 업데이트 |
| 6 | Revoked Certificates | m | m | 폐지된 인증서 리스트 |
| 7 | CRL Extensions | m | m | 확장필드 |

- CRL 확장필드

| # | 필드명 | C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Authority Key Identifier | n | m | m | 기관 키 식별자, 발급자 정보 |
| 2 | Issuer Alternative Names | n | o | m | 사용안함 |
| 3 | CRL Number | n | m | m | CRL 번호 |
| 4 | Issuing Distribution Point | c | m | m | 디렉토리 주소 |

- CRL 엔트리 확장필드

| # | 필드명 | C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Reason Code | n | m | m | 원인코드 |
| 2 | Hold Instruction Code | n | o | m | 사용안함 |
| 3 | Invalidity Date | n | o | m | 폐지날짜 |
| 4 | Certificate Issuer | c | o | m | 사용안함 |

## 3.1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 3.11.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OCSP서비스용 공인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은 "시간 공인인증서 상태확인 기술규격"을 따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필드

| # | 필드명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Version | m | m | V3 |
| 2 | Serial Number | m | m | 자동으로 할당되는 일련번호 |
| 3 | Issuer | m | m | 인증서 발급자의 DN |
| 4 | Validity | m | m | 인증서 유효기간 |
| 5 | Subject | m | m | 인증서 사용자의 DN |
| 6 | Subject Public Key Info | m | m | 인증서 공개정보 정보 |
| 7 | Extensions | m | m | 확장필드 |

- 확장필드

| # | 필드명 | C | 생성 | 처리 | 내용 |
|---|---|---|---|---|---|
| 1 | Authority Key Identifier | n | m | m | 발급기관 정보 식별자, 디렉토리 주소, 인증기관 인증서 시리얼 번호 |
| 2 | Subject Key Identifier | n | m | m | 사용자의 공개키 hash 값 |
| 3 | Key Usage | c | m | m | Digital Signature, non-Repudiation |
| 4 | Certificate Policy | b | m | m | 인증서 정책, CPS 주소, 공인인증서 표시규격 |
| 5 | Policy Mappings | - | - | - | 사용안함 |
| 6 | Subject Alternative Names | n | m | m | 가입자 한글실명과 VID |
| 7 | Issuer Alternative Names | n | o | m | 사용안함 |
| 8 | Extended Key Usage | N | o | o | 사용안함 |
| 9 | Basic Constraints | - | x | x | 사용안함 |
| 10 | Policy Constraints | - | - | - | 사용안함 |
| 11 | Name Constraints | - | - | - | 사용안함 |
| 12 | CRL Distribution Point | N | m | m | CRL 획득 정보 |
| 13 | Authority Information Access | N | m | m | http://ocsp.tradesign.net:80/OCSPServer |
| 14 | OCSP No Check | n | o | m | id-pkix-ocsp-nocheck |

## 3.1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정보, 검증정보) 갱신

#### 3.12.1. TradeSign이 공인인증기관 자신의 인증서 갱신 시 절차

TradeSign은 공인인증기관 자신의 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전자서명공인인증체계의 변경에 의해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절차는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5.2(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설비)"를 준수합니다.

#### 3.12.2. TradeSign이 자신의 인증서(전자서명검증정보) 배포

TradeSign은 갱신된 인증서(전자서명검증정보)를 디렉토리 서버에 게시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신규,재발급,갱신)할 때에 가입자SW를 통해 갱신된 인증서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13. 공인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 3.13.1. 공인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유 및 절차

TradeSign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인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TradeSign 은 휴지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폐지 종료일을 정합니다.

②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휴지는 시작일 30일 전, 폐지는 종료일 60일 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3.14. 공인인증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TradeSign 은 전자서명법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4.1. 공인인증업무의 지정취소 사유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 3.14.2. 공인인증업무의 정지 사유

-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 전자서명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전자서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TradeSign 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른 공인인증기관으로 서비스를 이관하고 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관이 불가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가입자공인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및 '인계할가입자공인인

증서등의목록'을 제출합니다.

# 4.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 4.1. 공고설비

### 4.1.1.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공고 설비 운영 주체 및 책임사항

TradeSign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 4.2. 공고방법

### 4.2.1.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위치, 공고 방법, 공고 시점, 공고 주기 및 책임사항

TradeSign은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를 본 공인인증업무준칙 4.1(공고설비)의 정보저장위치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공인인증업무준칙 3.6.3(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발행주기 및 공고)에 따라 해당 사안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TradeSign의 공인인증서비스에 관련한 정보의 저장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radeSign공인인증업무준칙 : http://www.tradesign.net/cps.html
- OCSP : http://ocsp.tradesign.net
- 가입자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 : ldap://ldap.tradesign.net
- 최상위 인증기관공인인증서 : http://www.rootca.or.kr/cert.htm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 : http://www.rootca.or.kr/crl.htm

# 5. 공인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 5.1. 물리적 보호조치

TradeSign은 외부인의 침입이나 불법적 접근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인증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합니다.

### 5.1.1. 공인인증시스템 운영실

핵심인증시스템(키 생성 시스템, 인증서 생성·관리시스템, 디렉토리 시스템, 인증서 상태 확인 시스템 및 시점확인 시스템 등)은 별도의 구획된 통제구역 내 설치, 운영합니다.

### 5.1.2. 다중출입, 침입감지, 경보 및 감사, 통제

① 출입통제 시스템은 신원확인카드, 지문인식 및 무게감지 장치 등 다중으로 결합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며, 통제구역 출입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 기능을 갖는 감시통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합니다.

-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 침입감지시스템

② 하드웨어 보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이 핵심인증시스템실 등에 출입할 경우에 반드시 담당 관리자가 동행합니다.

### 5.1.3. 물리적 잠금장치

핵심인증시스템은 물리적 접근통제를 위해 보안캐비닛 내에 설치 운영하며, 보안캐비닛 키는 별도의 열쇠보관함에 보관합니다.

### 5.1.4. 화재 및 수재, 정전방지 및 보호설비

① TradeSign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며,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② TradeSign은 침수에 대비하여 인증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합니다.

③ TradeSign은 화재에 대하여 인증관련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할 때 시스템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성분의 휴대용 소화기 및 자동 소화설비 등을 설치합니다.

④ TradeSign은 제한된 장소의 내화금고에 주요 저장기록매체를 저장하여 물리적으로 접근을 통제합니다.

### 5.1.5. 항온항습, 통풍 및 기타 보호설비

Tradesign내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설비를 운영해야 합니다.

#### 5.1.6. 시설 및 장비의 폐기처리 절차

TradeSign은 시설 및 장비, 문서, 데이터를 폐기하는 경우 보안 관리자가 입회하에 물리적, 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파기합니다.

#### 5.1.7. 원격지 백업설비 운영

TradeSign은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대비하여 10km이상 격리된 원격지 백업설비를 설치, 운영하며, 물리적으로 접근통제장치와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캐비닛에 보관합니다.

### 5.2. 절차적 보호조치

#### 5.2.1.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공인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자 업무를 지정하고 구분하며 업무분장표에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 모든 보호조치를 계획, 감독, 통제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 모든 보호조치의 실행을 담당하는 보안관리자를 지정
- 주요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관리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을 1인 이상 확보하여 보안실무자로 지정

#### 5.2.2. 공인인증업무 담당자 인증

물리적 인증방법은 다중결합(신원확인카드, 지문인식, 무게감지)통제 구역을 통과해야 하고, 업무에 맞게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있는 자만 허용하고, 시스템 인증방법은 방화벽 시스템과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OTP(One Time Password)로 승인된 담당자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 5.2.3. 동일인에 의해 동시 수행 될 수 없는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업무 운영의 독립성과 보안성을 감안하여 키 생성 업무는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외 공인인증업무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 2인 이상이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 5.3. 기술적 보호조치

#### 5.3.1.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① 전자서명키(전자서명생성정보, 검증정보) 생성

TradeSign은 인가된 인원만이 내부 및 외부 물리적 침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키생성 시스템에서 전자서명키를 생성합니다.

②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TradeSign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봉인, 접근권한 확인 및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변경 방지 기능을 갖춘 저장장치에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③ 전자서명생성정보 파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훼손·유출되었을 경우에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 저장매체를 물리적, 논리적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④ 전자서명생성정보 사용기간

TradeSign 및 가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해당 인증서가 유효한 동안만 사용합니다.

#### 5.3.2. 공인인증시스템 구성 및 관리

서비스관리시스템(SMS)과 서버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을 시행하며 시스템 추가/폐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공인인증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 생성 시스템
- 인증서 생성·관리시스템
- 디렉토리 시스템
- 인증서 상태 확인 시스템
- 인증서 등록 시스템

#### 5.3.3. 공인인증S/W형상관리

서비스별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추가/변경/삭제 시 사항을 기록하여 버전별 형상을 관리합니다.

#### 5.3.4.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회선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며, 네트워크시스템의 추가/폐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 5.3.5. 부가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호 조치

서비스관리시스템(SMS)과 서버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점검을 시행하며 시스템 추가/폐기/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를 합니다.

- 시점확인 시스템
- 웹서비스 시스템

### 5.4. 인적보안

#### 5.4.1. 공인인증업무 인력 요구사항 및 신원 절차

공인인증 업무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으로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 2조(지정기준)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12인 이상 확보합니다.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5.4.2. 공인인증업무 교육 및 업무순환

① 공인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년 1회 이상 정보보호관련 내부 또는 외부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②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의 준수에 관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며, 직원의 업무변경이나 인사이동, 퇴직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계정 삭제 및 출입카드를 반납합니다.

#### 5.4.3. 비인가된 행위에 대한 처벌

비인가자가 인증 및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전자서명법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에 따릅니다.

### 5.5. 감사 기록

#### 5.5.1. 감사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TradeSign은 핵심인증시스템과 기타인증업무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 사건 등의 세부내역을 감사 기록에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가입자 등록 정보를 입력・접근・변경・삭제
- 전자서명정보를 생성・접근・파기
- 인증서를 생성・발급・갱신・효력정지・폐지
- 가입자 인증서의 등록 및 관리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핵심인증시스템의 시작과 종료
- 계정의 추가 및 삭제
- 사용자 권한 변경
- 로그인(login) 및 로그오프(logoff)
- 기타 핵심인증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활동

#### 5.5.2. 감사기록 보호조치

감사 관리자 외 시스템의 각 업무 관리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5.3. 감사기록 백업 주기 및 절차

관리책임자는 인증시스템의 감사기록을 매월 1회 이상 위·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제외한 백업매체에 백업하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5.6. 기록 보존

### 5.6.1. 보존되는 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기준에 따라 정보를 기록합니다.

- 공인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 증명서 등의 사본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효력 정지 및 폐지목록(CRL)
-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정보(공인인증서 폐지가 전자서명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이를 결정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인인증서 폐지사유에 관한 기록)
-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정보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생성에 관한 기록과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수령서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 5.6.2. 보존기록의 보호조치

보존기록은 물리적, 인적통제를 통한 인가된 관리자만이 접근가능하며, 시건장치가 구비된 캐비닛에 보관하여 보존기록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도록 보호합니다.

### 5.6.3. 보존기록의 백업주기 및 절차

보존기록은 일/주/월 단위로 백업하여 보존하고, 월 백업본은 보존기록의 손실 및 파괴에 대비하여 원격지 백업설비에 각1부씩 소산하여 보관합니다.

## 5.7. 장애 및 재해복구

### 5.7.1. 공인인증업무 장애 및 재해 유형별 신고 복구 절차

공인인증업무 장애 및 재해 시 "공인인증업무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신고 및 복구절차에 따라 복구합니다.

### 5.7.2. 공인인증업무 장애방지 등 연속성 보장 대책

① 핵심인증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하여 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② 네트워크 회선은 서로 다른 ISP로부터 제공되도록 이중화하여 구성하며, 하나의 네트워크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회선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구성합니다.

# 6. 공인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 6.1. 보증

TradeSign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증합니다.

-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이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즉, 가입자의 신용 및 가입자 관련 정보의 불변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6.2. 배상

### 6.2.1. 배상책임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 26 조(배상책임)에 의거 TradeSign이 제공한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TradeSign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 6.2.2. 배상한계

TradeSign은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간배상총액(10억원) 내에서 배상하며, 건당 최고배상액(10억원) 내에서 배상합니다.

보험계약 상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초과 분에 대에 배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 6.2.3. 배상책임의 면책

① TradeSign의 공인인증서 정책(용도, 발급대상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② TradeSign의 공인인증서 서비스 “발급(신규, 재발급, 변경, 갱신) 및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폐지 목록의 공고 등” 제공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③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TradeSign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이용자 및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⑤ TradeSign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⑥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및 본 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⑦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⑧ 전자우편용,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공인인증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6.2.4.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CRL, OCSP) 책임

① TradeSign 은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CRL의 다음공고시각(Next Update) 이내에 CRL을 업데이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입자, 이용자 손해
- 폐지 또는 효력정지 사실이 CRL에서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가입자, 이용자 손해
- 가입자의 인증서 폐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실시간유효성확인(OCSP)'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가입자, 이용자 손해

② TradeSign 은 인증서 유효성 확인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 다음의 책임이 없습니다.

- 최신 CRL이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이용자가 기존 CRL을 확인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공인인증기관의 과실이 없는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 폐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시각과 CRL의 다음공고시각(Next Update)까지의 시간차에 의한 가입자, 이용자의 손해 (공인인증기관의 과실이 없는 경우)

③ TradeSign은 신뢰성 있는 인증서 유효성 확인을 위해 CRL 보다는 OCSP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6.3. 분쟁 해결

#### 6.3.1.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에게 전달되는 문서(또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포함하며, 전자서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전자서명과 관련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전자서명에 사용된 공인인증서가 서명 당시에 유효한 상태이며 정지 또는 폐지 상태가 아니어야 함

#### 6.3.2. 준칙의 해석 및 집행과 관련된 준거법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은 전자서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6.3.3. 재판 관할

TradeSign과 인증관련 당사자간의 인증업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 소송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을 따릅니다.

#### 6.3.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TradeSign은 가입자 및 이용자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분쟁해결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자서명관련법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쟁 발의 또는 관련 당사자는 TradeSign에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동 문서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관련법 위반행위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전자서명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가 TradeSign 인 경우에는 TradeSign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관련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전자서명관련법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6.4. 개인정보보호

#### 6.4.1. 개인정보처리방침

TradeSign은 전자서명법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며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링크 : http://www.tradesign.net/uview/privacy.jsp

#### 6.4.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TradeSign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합니다.

① 공인인증서의 발급 등의 서비스 및 요금결제
②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③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식별, 비인가 사용방지, 갱신안내 등의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④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6.4.3. 개인정보의 제공

TradeSign은 공인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가입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업무 외의 타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한 ISP에 주민번호 제공' 등 가입자가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TradeSign은 및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가입자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

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가입자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가입자 동의에 따라 파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5. 감사 및 점검 등

### 6.5.1. 정기점검

TradeSign은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정기점검)에 따라 인증업무 전반에 대해 년 1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 6.5.2. 변경심사

TradeSign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를 신규도입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4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내용을 사전에 점검받습니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시스템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6.5.3. 감사기록의 보관

Tradesign은 공인인증시스템 관련 감사기록을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한 저장매체로 백업합니다.

## 6.6. 관련법의 준수

본 준칙의 해석과 적용은 TradeSign은 아래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시행령, 전자서명법시행규칙
- 고시4종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
  . 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업무준칙(CPS)

TradeSign 및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관련자들은 전자서명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7. 공인인증업무준칙의 효력

①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TradeSign은 개정된 공인인증업무준칙를 시행하기 최소 15일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③ 본 공인인증업무준칙은 새롭게 개정된 준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효력이 종료됩니다.